장기사업자대출 거래조건 안내

(2022.02.15부터 신규 중단)

***2021년 10월 25일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업무의 단계적폐지 결정에 따른 은행이용자보호계획 안내**

2026년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은행이용자보호계획> 은행이용자보호계획안내> 대출상품> 씨티 비즈니스 대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는 고객께서 받으신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 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대출 거래 약정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그 부속약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상품명** : 장기사업자대출

2. **적용약관**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3. **대출기간** : 3년~5년

4. **대출신청 자격요건** :
 1)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기업
 2) 당행 고객등급(Grade) S, A, B등급(KED 5등급) 대상

※ 단, 당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급금 포함)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거래정보 혹은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및 은행이 정한 사유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5. **대출한도** : 최대 10억원 (담보별 *담보인정비율 범위내)

* 아파트 80%, 공장/상업용빌딩(상가,근린생활시설등) 70% 등

6.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7. **대출형식 :** 개별대출

8. **기한연장** : 가능

1) 연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연장이 안되거나 일부 상환하셔야 합니다.
2) 만기가 지난 후에는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적용되며,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9. 대출상환방식 : 원금분할상환 방식(거치기간 최대 1년)

- 대출금의 최소 1% 또는 2% 매년 원금분할상환 방식

담보인정비율	분할상환 조건
60%이하	대출금의 최소 1% 매년 원금분할상환
60%초과 ~ 80%이하	대출금의 최소 2% 매년 원금분할상환

-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시설대 일부분할 상환제도가 적용되는 신규 대출은 거치기간 운용 불가함.

10. 담보구분 : 공장,상가,빌딩,오피스텔,아파트,주택 등 부동산 담보(근저당권 설정)

11. 대출이자율

조달금리에 신용프리미엄(신용원가)/자본비용/업무원가/법적비용/정책마진/우대금리(감면금리)등을 감안한 가산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용금리는 고정금리부와 변동금리부로 나뉘며, 고정금리라 함은 원칙적으로 여신만료일까지 금리를 변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변동금리는 약정기일 이내라 하더라도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동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신 약정서를 참조하십시오.
(구체적인 적용이율은 거래영업점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금리 종류

- 금융채3개월물(6개월물,1년물) 기준금리 : 여신실행과 그날로부터 매3개월(매6개월,1년)이 되는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율 민평평균 3개월물, 6개월물, 1년물 금융채AAA 종가를 말하고, 이자율은 3개월(6개월, 1년)마다 변동 됩니다.
- CD수익률 :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CD수익률의 산출이 중단되는 경우 그 대체금리는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로 합니다.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는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하여 공시하는 금리로서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므로, CD수익률의 대체금리로 선정하기로 합니다.
은행은 CD수익률의 산출이 중단됨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공시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하기로 합니다. 또한, 은행은 홈페이지에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금리 및 선정근거, 적용 시기 등 전환절차와 일정을 안내하기로 합니다.

12.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1)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2)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0%**를 적용합니다.

3)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4.9%**로 합니다.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연 2.0%를 적용합니다.

13.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

1)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다음 날부터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금리)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2)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기간 만료일 도래 전이라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3)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 날부터는 해당분할상환금(또는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대출원금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4) 당좌대출 및 통장대출의 경우 한도 초과지급 및 이자 원가 등으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5) 연체이자 부담이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따릅니다. (다만, 2024년 10월 17일 이후 신규 계약, 갱신/연장된 계약에 한해 해당됩니다)

14. 연체이자의 제한 등

1) 채권금융회사등은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경우에도 개인금융 채무자와의 기존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 이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024.10.17) 이후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합니다.

15. 이자계산 방법 등

1) 이자,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한도대출의 경우 대출금 이자도 대출원금에 포함되어 이자가 부과됩니다.
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납부) 방법
 - 매월 대출실행 해당일 또는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약정이수일에 자동이체계좌로 등록된 한국씨티은행 계좌에서 납부합니다.
 -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을 통해 원금 중도상환시에는 1만원 단위로 거래 가능합니다.
 - 휴일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을 통해서 대출상환 및 이자납입이 가능합니다.

16.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율 : 0%

17. 필요서류

1) 기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정관
2) 담보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심사관련 서류
 - 기업체현황(당행양식),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사 확인 세무조정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18. 부대비용

1)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만원

2)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주택법시행령 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3) 화재보험료(차주부담) : 고객부담(보험사 요율에 따름)

4)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감액, 말소비용 : 고객부담

19. 금리인하요구권

1)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되거나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등급 상승,재무상태개선,특허취득,담보제공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 인하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대출계약철회권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영업점 방문, 우편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는 철회 기한이 있으며,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이 기록에서 삭제됩니다.(대출 기록은 철회 완료 후 5영업일 이내 삭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실행금액과 철회신청 금액(원금)이 상이한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안내

A.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불이익사항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및 부과사유, 연체 정보등 등록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는 16.중도상환수수료 등, 연체이자율 및 부과사유에 대해서는 12.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13.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기한의 이익 상실 사례)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가)압류 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대출기한이 이르게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C.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 고정금리 : 여신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다만, 여신실행일 현재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해당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혼합금리 : 대출 실행시부터 고정금리 약정기간 동안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대출 잔여기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되어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D. 연체정보등 등록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이내에'연체 정보등'이 등록됩니다.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연체 정보등'이 등록됩니다.

22. 기타내용

1) 상기 기준은 당행 심사기준 및 개인신용도에 따라 제한 또는 변경 가능하며, 대출 심사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503-02-014 (2025.03.12 ~ 2027.03.11)

* 상기 유효기간은 본 상품안내의 게시기간이며, 상품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본 상품 안내는 2025년 3월 12일 기준이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